

SIDEX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 '전시자'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계약금을 납부 후 주최자로부터 참가승인을 받은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전시회'라 함은 서울국제과학기술자재전시회(이하“SIDEX”)를 의미한다.
3. '주최자'라 함은 SIDEX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 부스위치 선정

1. 주최자는 부스 참가규모, 참가실적, 신청순위, 전시품 및 전시자가 희망하는 위치 등을 고려하여 부스를 배정한다.
2. 주최자는 효율적인 전시장의 운영을 위해 전시자와의 협의를 거쳐 기배정된 부스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주최자의 승인 없이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상호 간에 교환할 수 없다.

제3조 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계약금과 함께 주최자에게 제출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정해진 일자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부스비 납부일정		
계약금	참가신청일	부스비 X 20%
중도금	전시회개막일 150일 전	부스비 X 20%
잔 금	전시회개막일 90일 전	부스비 X 60%
부가세	전시회개막일 90일 전	부스비 X 10%

2. 전시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한 날로부터 중도금과 잔금의 실제 납부일까지 미납한 중도금 또는 잔금에 대한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체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주최측에 대한 정보제공

1. 전시자는 주최자의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장치물 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전시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1.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동안 모든 기재 및 전시품에 대하여 보험에 부보 할 수 있다.
2. 주최자 측이 고의·과실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시자의 물품이 도난, 파손, 분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3.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안전 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하며, 주최자는 필요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6조 원상복구

1. 전시자는 행사를 위해 반입한 시설 장비, 물품, 기타 자재 등을 전시품 반출기간 내에 완전히 철거 및 원상복구 해야 한다.
2. 이에 따른 원상복구가 충분치 못하거나 또는 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2회 이상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주최자가 원상복구를 하고, 그에 따른 경비를 전시자에 청구할 수 있다.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7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전시품은 배정된 전시공간을 벗어날 수 없으며,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

1. 전시자가 참가신청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전시자는 즉시 주최자에게 문서 등으로 해당 사유 및 축소 수량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및 규모축소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2. 단,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참가취소 및 부스축소 위약금 (서면 접수일 기준)	
계약일로부터 전시회 개막일 151일 전까지	총 부스비 혹은 축소분 부스비 X 20%
전시회 개막일 150일 전부터 91일 전까지	총 부스비 혹은 축소분 부스비 X 40%
전시회 개막일 90일 전부터 전시회 개막일까지	총 부스비 혹은 축소분 부스비 X 80%

제9조 계약의 해지

1. 주최자는 전시자의 귀책사유로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 주최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전시자에게 이행을 최고한 후 전시자의 불이행 시 전시회 개최 전 또는 개최 중이라도 출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배정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 나. 주최자의 사전 승낙 없이 배정된 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전대하거나, 상호간의 교환한 경우
 - 다. 참가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않은 경우
 - 라. 전시자가 참가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시회의 추진에 저해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2. 본 조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전시자는 제8조에 따른 위약금을 주최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 전시회 취소, 변경

1. 주최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2. 단, 불가항력 등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천재지변, 재난, 전염병, 국가시책 변경, 폭동, 테러 등)에 의하여 전시회를 축소 하거나 전시회 개최를 변경 및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 참가계약 해지 및 환불은 민법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1조 보충규정

1. 주최자는 필요 시 보충규정을 제정하여 전시자가 제공받기로 한 전자메일 또는 주소로 개별적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참가규정의 일부로 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해당 전시장이 정하는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12조 분쟁해결

1.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을 따른다.